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. 5. 2 선고 2022가단3186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익 담당변호사 윤성한

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서하 담당변호사 김하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4. 4.

판 결 선 고 2023. 5. 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강원 양양군 D 임야 1289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9. 2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강원 양양군 D 임야 1289㎡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20. 9. 23. 접수 제10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은 2020. 9. 22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(이하 ‘이 사건 법률행위’라 한다)하였다.

나. 피고는 2020. 9. 23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4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

이 사건 법률행위는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행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

갑 제1 내지 11,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C에게 2016. 1. 27. 1,300만 원을, 2017. 12. 6. 800만 원을 각 대출하여,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5,062,748원[=(2016. 1. 27.자 대출 원금 1,300,002원 및 이자 2,148원) + (2017. 12. 6.자 대출 원금 3,733,344원 및 이자 60원)]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.

2) 사해행위인지 여부

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200417 판결 등 참조).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보건대, 갑 제14 내지

17호증,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,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강원 양양군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.

①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강원 양양군 E 임야 347㎡, 강원 양양군 F 임야 708㎡, G 임야 608㎡를 소유하고 있었다.

② C이 2020. 9.경부터 2022. 8경까지 체납한 지방세(재산세와 주민세 등)가 없었다.③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.

④ H 주식회사가 C에 대한 채권에 터잡아 위 4필지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3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(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)를 신청하고,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J 주식회사가 9,765,726원의 채권에 기하여, H 주식회사가 11,394,057원의 채권에 기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가 배당절차에서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하기는 하였다.

그러나 위 강제경매절차는 이 사건 법률행위로부터 9개월 정도가 경과하고 개시된 것이고,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대상 부동산(위 4필지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3필지 부동산)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,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배다현